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77호 2018. 12. 7.(금)

## 【조 례】

제1201호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2
제1202호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7
제1203호 공주시 아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제1204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12
제1205호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 .....	38
제1206호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2
제1207호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7
제1208호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49
제1209호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	53
제1210호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기구)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59
제1211호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 .....	65
제1212호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	73
제1213호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81
제1214호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85
제1215호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90
제1216호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94
제1217호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96
제1218호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 .....	97

제1219호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98

제1220호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99

제1221호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1

제1222호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2

제1223호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3

제1224호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5

제1225호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6

제1226호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7

제1227호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 108

제1228호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 110

【규 칙】

【훈 령】

【예 규】

【공 고】

【고 시】

제2018-211호 사곡면 계실리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 기본계획 고시 ..... 112

회 람							
--------	--	--	--	--	--	--	--

## 《시보발행안내》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등을 게재토록 되어있습니다.

매월(1일, 15일)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  
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01호

### 경쟁제한 및 상위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경쟁제한 및 상위법 불합치 조례 정비를 위한 공주시 음식물류 폐  
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제1장 경쟁제한 개선을 위한 정비가 필요한 조례

제1조(「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

례」의 개정) 공주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별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하여금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2조(「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탁 운영 등)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3.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공주시에서 출자한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③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시공사에 일정기간의 시험가동기간을 줄 수 있다.

제10조를 삭제한다.

### 제3조(「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 고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민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을 위한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한다.

### 제4조(「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삭제한다.

## 제2조 상위법령 불합치 정비를 위한 조례

제5조(「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28조제1항 중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변경하거나”를 “변경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공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는 별 제16조제5항 및 영 제60조제1항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1. 마을 진입로 확장·포장공사
2. 배수로 설치공사
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4. 보안등(保安燈) 공사
5. 보도블록 설치공사
6.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7. 마을회관 공사
8. 공중화장실 공사
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
10. 공원 공사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는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제7조(「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의 개정) 공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의 2에서 정한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  
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02호

###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  
하여 민족정신 함양과 애국심 고취하는데 필요한기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  
념사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기념사업”이란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서 나타난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을 계승하고, 시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기 위한 기념행사,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교육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념사업의 추진방향 및 추진사업에 대한 자문
2. 기념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계획의 종합·조정에 대한 자문
4. 기념사업과 관련된 행사의 지원 및 홍보
5. 그 밖에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청년(15세 이상~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을 10분의 1이상 포함하고,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3.1운동단체, 광복단체 및 국민운동단체 소속 회원
2. 공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4. 교육계 관련 인사 및 학생
5. 종교계 인사 및 종교단체 소속 회원
6. 문화예술단체·직능단체 및 시민단체의 소속 회원

7.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8. 공주시에 거주하거나 소재 고등학교·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9. 그 밖에 시민공모에 의해 선정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의 임기는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거나,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되어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은 결원된 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안건이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03호

###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이·통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휴대전화 요금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04호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0조, 제112조부터 제120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  
조에 따라 공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공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  
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는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과 사업소를,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둔다.

**제3조(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① 시 본청의 국장 및 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 소장 및 과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등)**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로 정한다.

## 제2장 시 본청

**제5조(부시장)**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7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민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 경제도시국을 두고, 각 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시민자치국에 두는 과)** 시민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시민안전과, 주민공동체과, 회계과, 세무과, 평생교육과, 토지정보민원과를 둔다.

제9조(문화관광복지국에 두는 과) 문화관광복지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 문화재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여성가족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제10조(경제도시국에 두는 과) 경제도시국에 지역경제과, 도시정책과, 허가과, 건설과, 교통과, 도로과, 산림경영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제11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

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제12조(소장 등) 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3조(소관사무 등) ① 보건소에는 보건과와 건강과를 둔다.

② 보건소장은 별표 3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4조(설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농·축·수산업 정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6조(소관사무 등) ①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

② 소장은 별표 4의 사무를 분장한다.

## 제4장 사업소

제17조(설치) 법 제114조에 따라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둔다.

제18조(소장) 사업소에 각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별표 5와 같다.

## 제5장 읍·면·동

제20조(설치) 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본청과 원활하게 업무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2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장·면장·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3조(부읍·면장의 직위 및 직급)** ① 법 제120조에 따라 읍·면에 부읍장·부면장을 둘 수 있다.

② 부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6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24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998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 980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8명

**제25조(정원책정 기준)**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6조(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 ①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정원관리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기획담당관,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 미디어담당관, 감사담당관”을 “ 기획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시민국”을 “시민자치국, 문화관광복지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다목 중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 복지시설사업소, 시립도서관”을 “보건소, 문화시설사업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안전산업국”을 “경제도시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미래도시사업단”을 “휴양사업소”로 한다.

② 공주시 발전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공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시 시민국장, 시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시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④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 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제6조제6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

⑤ 공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⑥ 공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⑦ 공주시 학술연구용역 시행절차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으로 한다.

⑧ 공주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⑨ 공주시 웅진문화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정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⑩ 공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시정담당관”을 “시민

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공주시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⑫ 공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시정담당관”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또한 “공무원의 포상은 시정담당관을 인사담당관으로 하고 감사담당관을 추가한다”를 “공무원의 포상은 감사담당관을 추가한다”로 한다.

⑬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⑭ 공주시 공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7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8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2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13조 중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 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 ⑮ 공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 ⑯ 공주시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하고, “시정담당관, 인사담당관”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8항 중 “후생팀장”을 “교육후생팀장”으로 한다.
- ⑰ 공주시 소식지 발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미디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
- ⑱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회과장, 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 ⑲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⑳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시민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회과장·복지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경로장애인과장·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경로복지”를 “경로복지, 경로시설”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 ㉑ 공주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복지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㉒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사회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고 “복지지원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㉓ 공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복지지원과장”을 “기획담당관,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㉔ 공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시민국장과 복지지원과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과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㉕ 공주시 민원상담위원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시민봉사과”를 “토지정보민원과”로 한다.

㉖ 공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통합민원 팀장”을 “민원조정팀장”으로 한다.

㉗ 공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시민국장”은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징수업무담당주사”를 “징수업무팀장”으로 한다.

㉘ 공주시 백제문화선양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㉙ 공주시 유구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㉔ 공주시 공주시민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평생교육팀장”을 “평생학습팀장”으로 한다.
- ㉕ 공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민국장, 교육체육과장”을 “시민자치국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 ㉖ 공주시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체육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 ㉗ 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관리과장”을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
- ㉘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으로 한다.
- ㉙ 공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제나목 중 “주무(업무담당 주사)”를 “사무장(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 ㉚ 공주시 기업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 ㉛ 공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업경제과장”을 “경제도시국장,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 ㉜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안전관리과”를 “건설과”로 한다.

㉓ 공주시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안전산업국장,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시과장, 허가과장”을 “경제도시국장, 기획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경로장애인과장, 도시정책과장, 허가과장”으로 한다.

㉔ 공주시 소비자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 중 “기업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

제20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기업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㉕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㉖ 공주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㉗ 공주시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농촌개발팀장”을 “농촌기반팀장”으로 한다.

㉘ 공주시 도시립동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㉔ 공주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건축허가팀장”을 “건축1팀장”으로 한다.

㉕ 공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 도시재생과장, 환경자원과장, 청소과장”을 “기획담당관, 도시정책과장, 환경보호과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

㉖ 공주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㉗ 공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산업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제5호 “수도과장”을 “상하수도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수도과”를 “상하수도과”로 하고, “상수도시설관리업무담당주사”를 “상수도시설팀장”으로 한다.

㉘ 공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세무과장, 도시정책과장, 토지과장”을 “시민자치국장, 경제도시국장, 세무과장, 토지정보민원과장,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

㉙ 공주시 지적재조사·경계결정 위원회 추진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시설주사”를 “업무팀장”으로 한다.

㉚ 공주문화예술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문화예술촌 관리업무 국장(단장)”을 “문화예술촌 관리업무 국장”으로 한다.

㉔ 공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시민국장, 안전산업국장, 미래도시사업단장”을 “시민자치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

㉕ 공주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안전산업국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

㉖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과장”을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농촌진흥과장, 기술보급과장, 산림경영과장”으로 한다.

㉗ 공주시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㉘ 공주시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유통과장, 복지지원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

㉙ 공주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시정담당관, 기획담당관, 복지과장, 농정과장, 축산과장”을 “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으로 한다.

㉚ 공주시 충남교향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시민국장과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과 문화체육

과장”으로 한다.

㉟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시민국장과 공공시설관리소장”을 “문화관광복지국장과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㊱ 공주시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시설사업소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공연업무담당팀장”을 “공연업무팀장”으로 한다.

㊲ 공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복지시설사업소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㊳ 공주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 중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1조 중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2조 중 “시립도서관”을 “도서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5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6조 중 “관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관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관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별표1 중 “공주시시립도서관 응진관”을 “공주시 응진도서관”으로 하고, “공주시 시립도서관 강북관”을 “공주시 강북도서관”으로 한다.

별표3 서식 중 “공주시시립도서관”을 “공주시 도서관”으로 한다.

[별표 1]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제4조 관련)

기 관 명		소 재 지	관할구역
공 주 시 청		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	공주시 전역
직속 기관	공주시 보건소	공주시 봉황로 123	공주시 전역
	공주시 유구보건지소	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40	유구읍
	공주시 이인보건지소	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39	이인면
	공주시 탄천보건지소	공주시 탄천면 통산3길 4-11	탄천면
	공주시 계룡보건지소	공주시 계룡면 월암송정길 10	계룡면
	공주시 반포보건지소	공주시 반포면 수실1길 8-8	반포면
	공주시 의당보건지소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종합사회복지관내)	의당면
	공주시 정안보건지소	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157	정안면
	공주시 우성보건지소	공주시 우성면 동대3길 11	우성면
	공주시 사곡보건지소	공주시 사곡면 호계장터2길 9-1	사곡면
	공주시 신평보건지소	공주시 신평면 신평길 81-11	신평면
	구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양지뜸길 7	구계,연중,세동,동해
	추계 보건진료소	공주시 유구읍 추동1길 1	추계1·2,덕곡,문금,탑곡
	신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이인면 승선군로 247-2	신흥1·2,오룡,초봉, 주봉1·2,만수,운암
	대학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임천고개로 16	대학1·2,운곡,견동, 국동,유하
	덕지 보건진료소	공주시 탄천면 하효동길 64-6	안영,덕지,화정,남산
화현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104	화현,경천,금대,상성, 월곡,죽곡,향지	
왕흥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악로 395	구왕,내흥	

	양화 보건진료소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410	양화1·2
	마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마암길 29	마암
	상신 보건진료소	공주시 반포면 도예촌길 6	상신,하신,온천1·2
	석장리 보건진료소	공주시 석장리길 88-35	석장리,무룡
	문천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정안마곡사로 622	문천,내문,산성,월산
	장원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구억말길 90	장원1·2,운궁,고성,쌍달,석송
	모란 보건진료소	공주시 정안면 달성길 75	상용,화봉1·2,전평,북계1·2,평정1·2,의당오인
	용봉 보건진료소	공주시 우성면 신영골길 1-6	용봉,죽당,안양,오동,봉현,보흥,어천,방흥
	귀산 보건진료소	공주시 우성면 문천길 19	귀산1·2,동곡,반촌,신웅,내산1·2,한천,목천1·2
	운암 보건진료소	공주시 사곡면 정안마곡사로 1762	운암,회학,가교,월가,유룡,부곡
	대룡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평면 새우재길 51	대룡,입동,용수,청흥,봉갑,조평,쌍대
	평소 보건진료소	공주시 신평면 평화길 152	평소,영정,선학,화흥
사업소	공주시 농업기술센터	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	공주시 전역
	문화시설사업소	공주시 고마나무길 17 (웅진동)	공주시 전역
	휴양사업소	공주시 수원지공원길 222 (금학동)	공주시 전역

**국장별 분장사무** (제7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시민자치 국 장	1 행정구역, 선거, 지역여론(동향), 민간협력, 교류협력, 국도정 주요시책,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복무, 행정능률, 공인, 정보공개,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직장 민방위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임명, 조직 및 정원관리, 직원교육 및 복지증진, 공무원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지역안전·재난관리 정책 총괄 및 조정, 안전문화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5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해복구지원, 재해구호, 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 지역재난협력, 민방위대, 민방위 시설·장비, 안전시설관리, 자연재해 대응 등에 관한 사항
	6 주민자치, 지방분권, 각종 사회단체 관리, 지역공동체, 사회적경제, 마을 만들기(신규마을 조성) 등에 관한 사항
	7 지출, 회계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공사·용역 계약, 물품관리, 조달 등에 관한 사항
	8 관용차량관리, 재산(공유, 행정) 관리, 지방재정공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9 본청, 읍면동 등 공공청사 신축·관리,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
	10 세무행정, 개별주택가격, 세입관리, 세무조사, 체납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교육경비 지원, 한마음장학회 운영, 평생교육, 시민대학,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2 도서관의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업무,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사항
	14 민원 총괄, 외국인 민원, 복합민원접수·분배, 민원제도 개선, 민원 시책 발굴, 컨텍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복지국장	1 문화, 예술, 종교단체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사항
	2 문화기반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 공예품 판매전시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복지국장	3	공주시 시립합창단, 충남 교향악단, 충남연정국악원 운영·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
	4	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단체 관리, 금강 신관공원 리모델링, 쌍신공원 축구장 등에 관한 사항
	5	관광정책, 관광지·관광자원·관광상품 개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사항
	6	문화재단, 문화재보호, 문화재 학술·지표조사, 무형문화재, 천연 기념물관리, 국가지정·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에 관한 사항
	7	세계유산 후속대책, 고도보존 육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적지 관리, 석장리박물관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복지기획, 국가보훈, 자원봉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서비스연계, 자활, 의료급여, 복지대상자 조사 및 사후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9	노인복지, 기초연금, 요양보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포함), 장애인 복지, 복지시설, 장사업무(나래원 포함) 등에 관한 사항
	10	여성친화, 양성평등정책, 인구 및 청년정책 총괄, 여성인력개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아동복지, 보육시설 지원, 청소년 업무,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에 관한 사항
	11	환경정책, 환경대응, 수질관리, 가축분뇨폐수시설처리 인허가 등 환경 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12	청소행정, 자원순환시설,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13	문화시설사업소, 휴양사업소 업무 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경제도시 국장	1	기업유치 및 지원, 투자유치, 공장설립, 창업지원 산업단지 조성 등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창업 및 육성, 중소기업 판로지원, 해외시장 개척, 노사협력, 에너지 유통관리, 전기공사업, 노동조합 관리, 노사안정 등에 관한 사항
	3	지역 일자리, 청년 일자리 등 고용촉진, 지역경제 발전,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담배소매인 지정,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관리,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사업,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5	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재생(뉴딜)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 스마트 도시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건축 인·허가, 신고, 주택행정, 건축과 관련한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에 관한 사항

경 제 도시 국 장	7	전문건설, 농촌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 하천(금강)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 하천골재 채취, 국가·소하천 유지관리, 공유수면 유지관리, 치수 및 하천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교통정책, 교통행정, 교통정보, 주차장 조성 및 유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9	버스, 택시, 화물차, 자동차 관리, 운수지도, 대중교통체계개선, 공영차고지 등에 관한 사항
	10	국유재산관리,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신설·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 안전시설물(교량) 설치 유지(안전점검 포함) 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가로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산림시책 발굴, 조림사업, 임목벌채, 산림병해충, 채석단지, 사방댐, 산지사후관리, 산불예방, 임산물 생산기반 및 조성, 밤 가공 및 유통, 밤 6차 산업, 공원정비, 가로수 조성 및 조경사업 등에 관한 사항
	12	수도행정, 상·하수도 정비, 지하수 보존 및 이용, 상·하수도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별표 3]

**보건소장 분장사무**(제13조제2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보건소장	1 「지역보건법」 제11조에 규정된 사무에 관한 사항
	2 보건행정종합기획 수립 및 시행
	3 보건진료에 관한 사항
	4 의약 및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
	5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7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8 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9 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0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12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13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
	14 환경성 건강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치매안심센터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보건·의약·감염병·가족보건·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별표 4]

**농업기술센터소장 분장사무**(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농업기술 센터소장	1	농어촌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촌진흥자금, 농촌복지, 농지보전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고품질 쌀생산 대책, 정부양곡,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농자재 지원, 농업재해, 농기계공급 등에 관한 사항
	3	농산물 유통, 농산물 수출, 로컬푸드 활성화, 학교(공공)급식 운영,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4	축산사업, 내수면 어업, 조사료 생산, 가축분뇨, 알밤한우 육성, 곤충사업, 축산지도사업 등에 관한 사항
	5	가축방역, 동물보호 및 등록, 축산물 유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
	6	농촌진흥사업 종합기획·조정·평가, 농촌진흥기반조성, 농촌 진흥조직 역량강화, 농업인교육훈련, 학습단체 조직육성, 강소농 육성, 그 밖의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7	농업회관·농촌테마공원 운영, 도시농업육성, 도농교류사업, 농촌체험 및 농업문화 확산 등에 관한 사항
	8	귀농귀촌인 종합지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및 농업현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9	농작물 안정생산 및 신기술 보급, 농업생산환경 진단 및 개선, 우량종자 보급,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정비·이용 교육 등에 관한 사항
	10	농촌지원 활용 상품화, 소규모 농산물 가공 지원 시범 및 창업교육,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장지도 및 신기술 보급,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배기술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12	농업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사업소장별 분장사무** (제19조 관련)

구 분	분 장 사 무	
문화시설 사업소장	1	시민운동장, 백제체육관, 시립야구장, 문예회관, 국궁장, 곰나루 국민관광지, 곰나루 야외공연장, 곰나루 어린이수영장 등 공공시설의 관리·운영,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공연의 대관 및 집회, 수준 높은 다양한 공연 유치에 관한 사항
	3	연지, 야생화단지 등 사업소 주변 정비에 관한 사항
	4	고마 시설 관리 및 운영(대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문화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휴양사업 소 장	1	주미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사계절 썰매장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목재문화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유아숲체험원, 숲해설 등 산림교육에 관한 사항
	4	한옥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금학생태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휴양사업소 운영에 관한 사항

[ 별표 6 ]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제25조제1항 관련)

구 분	일 반 직	별 정·정 무 직
비 율	99% 이상	1% 이내

- ※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 읍면동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기]

##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5조 제2항 관련)

###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급	9급	전 문 경력관
비 율	1% 이내	7%이내	28%이내	32%이내	24%이내	8%이상	0%

\* (비고) 다만, 보건진료직렬 6급 13명 중 12명인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운영지침에 따라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구 분	연 구 직		지 도 직	
	연 구 관	연 구 사	지 도 관	지 도 사
비 율	3% 이내	97% 이상	10% 이내	90% 이상

### 3. 별정직 공무원

구 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7급 상당	8급 상당	9급 상당
비 율		100% 이내			

\*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8]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26조제1항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 무 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b>총 계</b>	<b>998</b>	-				
<b>정무직 계</b>	<b>1</b>	<b>1</b>				
시장	1	1				
<b>일반직 계</b>	<b>958</b>	-				
3급	1	1				
4급	6(1)	3	1	2(1)		
5급	49	26	2	4	2	15
6급 이하 계	902					
<b>별정직 계</b>	<b>1</b>	-				
6급 이하 계	1					
<b>연구직 계</b>	<b>8</b>	-				
연구관	-					
연구사	8					
<b>지도직 계</b>	<b>30</b>	-				
지도관	3			2		1
지도사	27			27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 수임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05호

### 공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  
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로 사망한 자 중 유가족이 없어 공주시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발굴하여 고독사 위험자에게 필요한 자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의 성별, 연령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청년층·중장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등 안전확인을 위한 장치의 설치 및 관리
3. 정기적인 안부확인 서비스 제공
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 제공
6.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서비스
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게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고독사 위험자
2.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8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06호

###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중 소득이 적은 사람(생활등급 9 ~ 12등급)의 신  
청”을 “신청”으로, “반영한다(다만, 가계의 경우에는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를 “반영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6.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인 사람에 대한 위문,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장제보조비 지원 등

제7조제2항 본문 중 “참전명예수당, 장제비, 특별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을 “참전명예수당, 장제보조비, 특별위로금, 보훈명예수당, 배우자 복지수당”으로 한다.

제10조 조 제목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명예수당 등의 지급)”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명예수당 등 지급 기준

대 상 자	수 당 명	금 액	지 급 일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u>200,000원</u>	매월
	장제보조비	<u>300,000원</u>	1회
	특별위로금	<u>100,000원</u>	매년
	배우자 복지수당	<u>100,000원</u>	매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명예수당	<u>100,000원</u>	매월
군상·공상군경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u>100,000원</u>	매월
무공수훈자,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u>100,000원</u>	매월

※ 비고 : 배우자 복지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07호

###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명 “공주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를 “공주시 의료급  
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에  
서 의결된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  
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08호

###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5조 중 “지원 할”을 “추진할”로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를 삽입한다.

제13조 앞에 “제3장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삽입한다.

제13조제1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을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를 운영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로, “단체에 공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 운영을 위탁할”을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로 한다.

제14조 다음에 “제4장 다문화가족협의회”를 삽입한다.

제4장(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장 다문화가족협의회

제1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스스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다문화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다문화가족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간 정보교환 및 지원, 모니터링 등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자치활동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별로 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제16조(구성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은 각 읍·면·동별 분회의 회장이 되고, 시장이 위촉 한다.

②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수석부회장 1명을 포함한다)
3. 감사 1명
4. 총무 1명

③ 회장·부회장·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총무는 회장이 지명한다.

④ 읍·면·동 분회는 읍·면·동별로 별도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운

영 한다.

제17조(협의회 지원) ① 시장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1. 협의회 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국외 교류·교육 및 연수 사업
2.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경연대회 및 우수사례 발표회 등
3. 협의회위원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화합행사
4.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참여 및 봉사활동
5.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8조(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임기) 협의회 위원은 읍·면·동 분회장 또는 위원직에서 위촉 해제 된 경우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제20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의는 두 달에 한번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협의회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21조(회의록) 협의회에서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21조 다음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5장에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른다  
제15조를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중 “조례”를 “조례의”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설치된 공주시 다문화가족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에  
서 의결된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09호

##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공주시에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동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실현으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함으로써 모든 아동이 존중 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아동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공주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구성은 성별, 연령별, 장애유무별(장애아동 및 장애부모 포함) 특성을 반영한다.

**제5조(아동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모든 아동은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은 교육·여가·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제6조(아동을 고려한 공공이용시설)** 시장은 도로·교통·공원·녹지 등의 조성 사업 및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사업의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안전성 검토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6. 문화, 여가, 놀이 등 아동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 확대

**제7조(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아동 환경안전망 구축
2. 아동 보호구역 확대
3.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4. 가정 내 피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안전망 구축

**제8조(아동 건강증진)** 시장은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심의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 및 지식·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충청남도 공주교육지원청 아동업무 관련 부서의 장
2. 공주경찰서 아동업무 관련 부서의 장
3. 아동업무와 관련 있는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4. 아동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
5. 아동분야 또는 성인지 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임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회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개인 사정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아동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제17조(실비변상)**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해당 업무를 위해 참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기구) 등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10호

### 공주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기구) 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공원을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안전·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터”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장소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3. “어린이놀이기구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공주시장이 관리·감독 하는 시설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공공의 목적으로 조성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2 및 「어린이놀이기구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시설 중 공주시장이 관리·감독 하는 시설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어린이놀이시설) 및 어린이공원(이하 “어린이놀이터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조성·관리 등)**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성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향후 조성되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방향 제시
2. 기본 및 실시설계 전반

3. 시설물 설치 및 공간 배치

4. 시설물 안전

③ 어린이놀이터 등을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어린이놀이터 등을 통해 어린이에게 친절한 도시로 나아간다.

2. 어린이놀이터 등은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만든다.

3. 어린이놀이터 등은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4. 어린이놀이터 등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한다.

④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에서 어린이가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공원 놀이터 활동가를 둘 수 있다.

**제5조(어린이놀이터 등 실무협의회)**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한 실무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 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

1. 어린이놀이터 등 조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

⑤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놀이터 등 총괄기획자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어린이놀이터 등 총괄기획자(이하 “총괄기획자”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총괄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총괄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터 등의 조성·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
2. 어린이놀이터 등과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 및 기본설계
3.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임대주택건설사업 내의 어린이놀이터 등 기획 및 기본설계
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총괄기획자가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사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⑤ 총괄기획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공주시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시장은 총괄기획자의 배치·자격요건·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총괄기획자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총괄기획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총괄기획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총괄기획자 업무)** ① 총괄기획자는 공주시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총괄기획자는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9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주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공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조성·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의 유지관리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터 등에 대한 조성 및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  
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11호

###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

공주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 공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  
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기관, 관계기관·단체 및 시설의 설치·운영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 및 경비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문자해독·학력보완·직업능력향상·인문교양·문화예술·민주시민참여 교육 등) 및 지원 사업
3.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
4. 지역·마을·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지원
5. 평생교육 관련 성과공유 및 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
6.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
7.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협력 및 연계사업
8.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해수행하는 사업

##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4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

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협의
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증진과 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자문 요청 사항 협의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공주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나. 공주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가.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운영자

나. 평생교육 관련 학계 등 관련 전문가

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라. 공주시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마.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직위나 담당 직무에 따라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 기관, 단체, 시설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평생학습축제와 평생교육 프로그램 심의 등을 위하여 공주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3장 평생학습관

제12조(설치)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2. 평생교육계획 수립·시행·홍보에 관한 사항
3.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4.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상담
5. 평생교육 관련 부서,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체계구축
6.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7.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지원·관리
8. 평생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
9.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10.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4조(인력 배치)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며, 운영에 필요한 평생학습관장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5조(위탁 관리) ① 평생학습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관을 위탁할 경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제4장 평생학습센터

제16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보장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
2.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구축 및 활성화 사업

4. 학습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

5.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인력 및 운영 지원 등)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평생교육관련 인력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보 칙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수강료는 별도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사용료는 금액, 감면사항 및 징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공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교육기관

과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생학습관의 기능에 관한 특례) 이 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12조의 평생학습관을 별도로 설치·운영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공주시 교육체육과에서 기능을 수행 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12호

### 공주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의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성별·계층·지역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 가. 청년의 참여확대
- 나. 청년의 능력개발
- 다. 청년의 고용확대
-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 마. 청년문화의 활성화
- 바. 청년의 권리보호

3. 청년정책 사업의 발굴 및 추진

-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 5.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 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공주시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청년정책 연구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기초조사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청년정책 사업)**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년의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
  - 나.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확대
  - 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
2. 청년의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취업을 비롯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분야의 역량개발
  - 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
  - 다. 청년인재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3. 청년의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 일자리 대책의 수립
  - 나. 청년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 다. 청년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
  - 라. 청년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환경 개선 지원
4. 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
  - 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 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 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 활동 장려
6. 청년의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의 권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

나. 청년의 권리에 대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홍보 사업

7.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청년정책 추진 행사(워크숍 등) 개최

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청년활동가 등) 양성

8. 그 밖에 시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 또는 청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정책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③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등)** ①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및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13호

### 공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주시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일자리 창출의 주요정책 등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주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공주시의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역일자리 창출 대책에 관한 정책 및 협의 사항
3.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4. 지역일자리 정책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의 자문 요청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일자리창출과 관련된 국장 및 부서장 5명 이내
2. 지역일자리 창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명 이내. 다만 노인,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의 각 분야별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일자리창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전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일자리 관련업무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로 참석한 공무원위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14호

###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  
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역의 노사민정 협력과 상  
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등)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의 근로  
자·사용자·주민·공주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의 협력이 필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4.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 노사업무 소관 국장
5. 지방고용 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6.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소관 과장이 되며, 서기는 노사업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회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회의 임기는 전임 위원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위원직을 사퇴하고자 할 때
3. 위원이 해당분야 대표자격을 상실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 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등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 의무)** ① 시·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시책 등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시·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주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15호

### 공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공주시에 소재한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 중 판매 품목 가격이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평균가격 이하이며 품질·위생·서비스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착한가격업소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신청 및 지정)** ① 시장은 신청 방법, 절차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한 선정기준 평가표를 고시·공고하고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착한가격업소를 공개모집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영업자에 대하여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고시·공고한 착한가격업소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여부를 평가·지정한다.

③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 하되, 신청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시로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인증서 및 표지판 교부
2. 쓰레기봉투 지원 및 위생방역 서비스 지원
3. 고객편의와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
4.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점검 및 지정취소)**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위생·청결·품질·서비스·공공성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적격여부의 판단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점검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평가결과, 고시·공고한 평가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용)** 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적격여부 평가 수행에 필요한 물가모니터요원 둘 수 있고,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위생·청결·품질·서비스·공공성 점검 등 모니터링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의무)** 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방문하는 경우 점검 및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16호

###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2조의17”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지방중소기업육  
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법률」 제4

0조 및 제42조”를 ““지방중소기업의 육성계획”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5”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본문 중 “이라 함은”을 각각 “이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제4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SC제일은행 공주지점장
7. KEB하나은행 공주지점장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17호

###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하천골재판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조 제목 “(세입세출)”을 “(세입세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  
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18호

###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용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19호

###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  
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20호

###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를 “운영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하여 주민 참여를 확대·보장함을 목적으  
로 한다”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경영계획 수립의 주민 참여) ① 관리자는 법 제78조의 6에 따  
라서 특별회계 운영에 관련한 예산편성, 사업집행, 결산 등 경영과정  
이 포함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주민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공주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의2(경영계획 수립의 주민 참여) ① 관리자는 법 제78조의 6에 따라서 특별회계 운영에 관련한 예산편성, 사업집행, 결산 등 경영과정이 포함된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주민참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 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21호

###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22호

###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명 “공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주시 수질개  
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23호

###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주  
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자금운영”을 “자금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  
영에 있어서”를 “운용에 있어서”로, “운영에 준한다”를 “운용에 준한다”

로 한다.

제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로, “농촌진흥자금운영심의위원회”를 “농촌진흥자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관리”를 “운용관리”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진흥자금운영계획”을 “진흥자금 운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운영”을 “운용”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운영상”을 “운용상”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24호

###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제6조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  
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25호

###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 본문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26호

###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규정”을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  
84조 규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결산검사결산검사위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를 “시장은 제4조”로 한다.

제12조 중 “위원”을 “시장은 위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27호

###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주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는 공주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공주시의회 제20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18. 11. 27.)  
에서 의결된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  
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공 주 시 장                      김 정 섭

2018년 12월 7일

공주시 조례 제1228호

###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

공주시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  
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으로 폐지되는 공

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채권·채무 등 모든  
관리 의무는 공주시 일반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 사곡면 계실리 시군창의아이디어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촌지역 경관개선, 기초생활기반확충, 주민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생활터전의 유지 및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2018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사곡면 계실리 창의아이디어사업의 기본계획을 승인 하였기에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7 일

## 공 주 시 장

1. 사 업 명 : 사곡면 계실리 창의아이디어사업
2. 사업목적 : 농촌마을의 기초생활기반확충, 지역경관개선 및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사업내용
  - 가. 위 치 : 충남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 나. 사업개요
    - 지역경관개선 : 탁탁거리조성(생태체험 인프라 조성)
    - 지역소득증대 : 일미장터조성(계실리마을 특성화)
    - 지역역량강화 : 주민리더십교육, 선진지견학, 컨설팅 등
4. 사업비 소요액 : 1,139백만원(국고 700, 지방비 300, 자부담:139)
5. 사업 예정기간 : 2017년 ~ 2018년(2년간)

6. 사업의 효과 : 농촌문화공간 형성을 통해 방문객 유입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7.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8. 기타사항 : 관계서류열람 (공주시청 정책사업과 ☎ 041-840-8564)